

의안번호	제 74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
운영 조례안

발 의 자	전원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5월 일

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(전원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4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5월 일
발의자 : 전원표, 김기창, 서동학,
박우양, 연철흙, 황규철,
이상식

1. 제안이유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3조의 2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·군에 대한 공영주기장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규정함(안 제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협의 :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정책과

라. 조례안 예고 : 2021. 5.20. ~ 2021. 5.26.(의회 홈페이지)

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건설기계”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공영주기장”이란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도지사는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설치 및 운영)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시장·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) ①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(이하 “설치·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, 인가 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설치·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
2.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
3.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
4.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
5. 공영주기장 운영방안
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③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·운영계획을 수립·변경한 때에는 이를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·게재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건설기계관리법

제33조(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) ① 삭제 <1999. 12. 28.>

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·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09. 12. 29.>

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09. 12. 29.>

[전문개정 1999. 1. 29.]

[제목개정 2009. 12. 29.]

제33조의2(공영주기장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영주기장(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(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설치·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미리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,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계획을 수립·변경하거나 인가·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8. 11.]

제33조의3(수용 및 사용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영주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토지·물건 및 권리(이하 이 조에서 “토지등”이라 한다)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·운영계획의 수립·인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15. 8. 11.]

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2. 비용발생 요인

-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토지매입비, 설계비, 건축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

3. 관련조문

- 안 제4조(설치 및 운영)

4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현재('21년도) 추진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비교하여 산출

※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: 30억원(70대 주차)

-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개소당 50대 규모의 주기가능 면적 필요시
- 공영주기장 개소당 21억원(도6.3, 시군14.7) 필요(시군과 30:70 비용 부담)

나. 추계 결과 :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35억원 필요(매 3년 1개소 설치)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
공영차고지 설치	3,500,000	700,000	700,000	700,000	700,000	700,000

※ 향후 화물차 및 건설기계 공영차고지 공동 설치 추진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+ 시군비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입						
도비						
시군비						
세 출	700,000	700,000	700,000	700,000	700,000	3,500,000
도비(공사비)	210,000	210,000	210,000	210,000	210,000	1,050,000
시군비(공사비)	490,000	490,000	490,000	490,000	490,000	2,450,000
재원 조달	700,000	700,000	700,000	700,000	700,000	3,50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210,000	210,000	210,000	210,000	1,050,000
	지방세	210,000	210,000	210,000	210,000	1,050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시·군비	490,000	490,000	490,000	490,000	490,000	2,450,000
특별회계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